

사건 사례

폭행 사건

워홀러 K씨는 친구를 때려 턱뼈를 골절시키고 경찰에 구속됨. 부모에게 부탁하여 \$27,000을 피해자에게 계좌좌로 지급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영문 탄원서를 작성 호주 경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상관없이 사법처리됨.



쌍방폭행 사건

워홀러 L씨 남매는 클럽에서 음주 중 옆 테이블 호주인들과 시비가 붙어 누나는 폭행을 당하고, 남동생은 누나를 때린 호주 여성을 응징함. 사건 연루자 모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고 남매의 피해가 가장 큰 점은 정상참작되었으나, 동생의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남동생도 폭행 가해자로 처벌을 받음.



경찰 출동 후 사건 미접수

Y씨는 호텔 바에서 시비가 생겨, 경미한 폭행을 당함.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어 가해자가 처벌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추후 사건이 접수되어 공식화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됨. 가해자가 호주인이지 백인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사건 접수를 확인해야 함.



AUSTRALIA WORKING HOLIDAY

10

귀국 준비



호주 비자 연장 또는 변경 | 귀국 전 처리 사항 | 귀국 후 처리 사항

10

귀국 준비



호주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호주 정부의 정책 변동에 따라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호주의민부 홈페이지, 유학원 또는 이민대행사(Migration Agent)를 통해 확인 필요함.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Second Visa)

비자 연장 개요

- 농촌지역 등 일손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경우 1년간 비자 연장(재발급) 가능.
- 해당 지역 : 시드니, 뉴캐슬, 울링궁, 센트럴코스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멜번 및 캔버라를 제외한 호주 전역.
- 특정 업무 : 농작물 재배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해당지역 및 업무는 이민부 웹사이트 참조 : (<http://www.border.gov.au/Trav/Visa-1/417-#> 웹페이지 내 Visa applicants 탭페이지에서 specified work 또는 Regional areas 참고)
- 재발급 비자의 유효기간은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첫 번째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이며, 호주 이외의 나라에서 신청한 경우 다시 호주로 입국한 시점부터 1년임.

비자 연장을 위한 주요요건

- 하루 7~8시간, 주 4~5일 이상 근무(주말포함하여) 주당 35~40 시간 일한 경우에는 Full-time으로 취급하여 실제 근무 일수가 4~5일이라도 7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
- Full-time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7~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1일로 계산하여 누적 일수가 총 88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농장 또는 공장 고용주의 확인서 필요(Form 1263)
-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63.pdf>
- 농장주의 서명과 날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 일부 워홀러들 중에는 1263 form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 것. 호주 이민부와 국세청이 연계하여 적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발각될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될 수 있고 향후 호주 비자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음.

연장 또는 변경



세컨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1263 form : 고용주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증명서

재발급 비자 신청 비용 : AU\$440(2017.7.1 부터는 \$390, 온라인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 시 추가 \$80), 급여명세서(Pay Slip), 소득 증명서(Pay Summary/Group Certificate), 세금 환급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공증된 사본도 인정)

해당서류는 이민부 비자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

신체 검사 : 신체검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경우 생략 가능 하며 1년 이상인 경우는 다시 받아야 함.

- 한국에 있을 경우 : 첫 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 호주 현지 이민부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학생비자 취득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학생비자로 변경 가능.

어학연수, 학부, 대학원 또는 직업교육 과정 선택이 가능하며 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영어성적(IELTS 또는 TOEFL) 제출이 필수.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어학연수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

학교 및 과정 선택은 '학원 선택 및 등록' (p.64) 참조

비자 신청 비용

-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 기본 \$550에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 발생.
- 현재 첫 번째 워홀 비자이거나 세컨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여 해당 비자로 호주에 체류중인 경우 : 한국에서 신청 시와 동일.
- 세컨비자를 호주 내에서 신청하였고 현재 해당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기본 \$550 + 추가 수수료 \$700
- ※ 비자 신청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 참조. (www.border.gov.au/Trav/Stud)



취업비자(457 비자) 취득

일정한 기간(최장 4년)동안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 비자 기간 동안 호주 출입국에 제한이 없음
- 가족 동반 가능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가능하며 고용주가 보증을 해야 함.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IELTS 5.0 이상)을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호주 이민부 홈페이지 참조.

www.border.gov.au/Trav/Visa-1/457-

영주권 취득

호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호주 시민권자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연방정부에 취직할 수 없음
- 비자 기간 동안 호주 출입국에 제한이 없으나 5년마다 갱신

고용주의 보증을 받아 취득하는 ENS와 RSMS 또는 본인의 기술과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취득하는 독립기술이민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호주 이민부 홈페이지 참조.

www.border.gov.au/Trav/Life/Aust-1#



귀국 전 처리 사항

일반 세금 환급

호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규정 하고 있음.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기간 전에 귀국하는 경우 '조기 세금 환급'(p.98) 참조

TFN을 발급 받고 호주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 함. (Non-lodgement advice)

고용주는 매 급여 지급일에, 정부에서 지정한 PAYG withholding tax table에 근거하여 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공제된 금액은 일정 기간마다 ATO에 납부해야 함. 해당 내용을 기록한 Pay slip을 피고용인에게 제공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일년간의 소득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Payment Summary(또는 Group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함.

귀국 전 처리 사항



세금 납부액 계산 방법

- '연간 총소득액 - 각종 경비' =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x 세율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인 경우 : 세금 추가 납부
-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인 경우 : 세금 환급

세율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워홀러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워홀러를 채용한 고용주는 호주 정부에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함.
- 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2016/17 회계연도 기준)

소득금액	거주자	비거주자	워홀러
0 ~ \$18,200	0%	32.5%	15%
\$18,201 ~ \$37,000	19%	32.5%	15%
\$37,001 ~ \$87,000	32.5%	32.5%	32.5%
\$80,001 ~ \$180,000	37%	37%	37%
\$180,001 ~	45%	45%	45%



준비 서류

- Pay Summary, Group Certificate 또는 마지막 Pay Slip
- 비용 공제 관련 영수증
- 환급 받을 계좌번호
- Medicare Levy 면제 신청서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forms/ms015>
- 여권 및 비자 정보

신청방법

- ATO 사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 <https://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lodge-online/>
- 회계사 이용 : 지역, 소득 구조 등에 따라 \$75 ~ \$15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저렴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일부 회계사의 경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것.



조기 세금 환급

워홀 종료 후 호주를 떠나기 전, 조기 세금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전년도 세금 환급 기간 이후(매년 7월 1일부터 호주를 떠나기 전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일반 세금 환급과 기본적인 절차 및 준비 서류는 동일함.

세금환급 신청 시, 추후에 호주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기해야 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ATO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회계사를 통한 접수만 가능.

은행계좌 및 각종계약 해지

해지처리

- 세금환급 시 환급액이 호주 계좌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
-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 숙소 및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시 2~4주 이상 미리 신청.
- 자동차보험(Car Insurance) 해지.
- 자동차제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고 계좌를 정리할 것.



이삿짐 정리

수화물 처리관련

- 한국에 가져가야 할 물건이 많은 경우 택배로 보낼 지 귀국하는 항공편에 가지고 탑승할 지 결정.
-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30kg 정도이므로, 미리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택배 이용 시, 우체국보다 한인 상점 등의 택배가 저렴한 편임.



귀국 후 처리 사항

연금 환급

호주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근무할 경우, 기본 임금 외에 9.5%의 연금이 본인의 연금회사 계좌에 적립되어 있음.

호주를 떠나는 경우 적립된 금액에 일정부분의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약 30~35%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음.

이 때 적립된 금액이라 함은 총 납입액에 각종 보험 및 계좌관리 수수료를 공제하고, 연금회사에서 해당 연금으로 투자활동을 하여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임.

귀국 후 처리 사항



연금 환급 신청은 호주 내에서 할 수 없고, 호주를 떠나고 비자가 취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 이민부로 비자 취소 요청 이메일을 보내야 함.

- super.hobart@border.gov.au
- 이메일 내용
비자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 | 영문이름(여권과 동일하게)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국적 | 현재 비자 번호 | 호주 출국 일자 | 한국 내 주소



신청방법

- ATO 홈페이지 DASP 에서 신청 가능
- <https://applicant.tr.super.ato.gov.au/applicants/default.aspx?pid=1>
- 개인 신상정보 및 TFN, 연금회사명(ABN 포함), 계좌번호 등 필요.

기타 유의사항

연금회사별로 매월 수수료 및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직장을 옮길 경우, 가능하다면 하나의 연금회사에 연금을 적립할 것.

